

# 1993년도 관보(官報) 요약 Ⅱ

(1993년 7월 1일 ~ 1993년 12월 31일)

## — 정보통신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 연구원 이 선 화

정보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에서는 정보통신표준체계연구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표준화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내 관련 법규의 보다 신속한 변동사항을 연구에 반영키 위하여 '대한민국관보'를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에 요약정리한 내용들은 1993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내용 중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부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간추린 것이다. 상기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까지 정리하였다. 본 자료가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법률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규 : 성문의 법령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 함으로써 성립되는 국법형식의 하나. (법 체계 상 헌법에 다음가는 효력을 지님)
- 법령 :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조약, 조례, 규칙 등을 약칭,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의 법령으로 크게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으며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음(법 체계상 법률보다 하위법규임)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공고형식을 의미함
- 공시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 공고방법은 관보, 신문에의 게재 또는 법원, 시·도·면의 게시판에의 게시 및 일정한 공보에의 게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통지수단, 신고수단의 목적으로 이용됨

1993년 7월 2일(금)

- 체신부공고 제 1993-87 사단법인 인천정보통신설립허가
  - 인천지역 정보화추진과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정보기술의 연구, 자문, 교육 지원으로 국가산업과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기여

1993년 7월 7일(수)

○ 체신부공고 제1993-88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

- 개정취지 :

(가)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고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가 보다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미흡한 규정을 정비

(나) 종합유선방송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보완

(다) 현행 기술기준 중 시행상 미흡한 규정 보완

1993년 7월 13일(화)

○ 체신부고시 제 1993-63호 고시폐지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의 세부분류품목 중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체신부고시 제 1993-5호(1993. 1. 15)를 고시한 날부터 폐지함

1993년 7월 22일(목)

○ 과학기술처공고 제 1993-39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및 취지 :

(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 등 기술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자가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토록 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포함시켜 기술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993년 7월 23일(금)

○ 대통령령 제 13,93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이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 중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체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의 업무를 체신부장관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통하여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역무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국내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간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동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기준을 부여함(영 제9조)

(나) 체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이용약관의 신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4조)

1993년 7월 27일(수)

○ 공보처공고 제 1993-6호 위성방송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 통신·방송 복합위성인 무궁화호('95. 4)의 발사를 계기로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체신부고시 제 1993-73호 전기통신사업공정 경쟁보장지침

- 전기통신사업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993년 7월 28일(수)

○ 과학기술처공고 제 1993-41 사단법인 과학진흥개발연구원 설립 허가

- 국내외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발굴·유치하여 국가발전 기술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며, 외국의 고급두뇌를 초빙하여 공동연구·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세계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993년 7월 29일(목)

○ 과학기술처공고 제 1993-42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과학기술원법이 제 16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보처공고 제 1993-7 유선방송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선방송관리법 중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자가유선방송의 허가를 폐지하고 기타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을 과감히 정비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993년 7월 30일(금)

○ 상고자원부공고 제12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 특정저장소의 전기설비 중 용량 20Kw미만의 전기설비 소유자 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체신부령 제 859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후 그 시험성적서와 형식승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능시험은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서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체신부령 제860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중개정령

-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갖추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할 범위를 축소하고, 동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교환회선설비만을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이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을 한 후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함(제7조)

(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교환회선설비만을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1급 기사 또는 기술사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자 2인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이상을 두도록 함(별표 2)

(다) 체신부장관의 권한위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

#### 1993년 7월 31일(토)

- 공업진흥청공고 제 1993-932 표준화능력평가 기관 지정
  -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 평가기관 지정내용을 공고

#### 1993년 8월 2일(월)

- 상공자원부공고 제 1993-61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1993년 8월 4일(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신한국 창조의 핵심적인 요소인 과학기술기본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1993년 8월 5일(목)

- 법률 제 4,58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제정
  - 광주과학기술원을 광주첨단과학 산업 기지 내에 독립된 학교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국제수준의 일류 공과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도산업, 복지국가의 건설을 선도하여

나갈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1993년 8월 6일(금)

- 상공자원부령 제13호 계량법시행규칙개정령
  - 계량법 및 동법시행령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 4,529호) 및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7. 13 대통령령 제 13,929호)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교정검사기관, 표준물질인증 기관과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체의 정밀측정기술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생산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1993년 8월 7일(토)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00호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용규정
  - 이 규정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993년 8월 12일(목)

- 공업진흥청공고 제 1993-967호 특별법인(한국산업표준원)설립 허가
  -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진흥과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별법인 한국산업표준원의 설립을 인가함

## 1993년 8월 14일(토)

- 외무부고시 제 1993-226호 통신보안장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양해각서

## 1993년 8월 19일(목)

- 체신부고시 제 1993-79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 제정  
-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3조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을 제정 고시

## 1993년 8월 27일(금)

- 체신부령 제 862호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전자파를 발생하여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줄 수 있는 기기(전자파장해기기)로써 장해검정에 합격한 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타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기에 대한 검정은 면제하고 대신 검정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로써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의 기기에 대하여는 장해검정을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기를 수입하는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1대의 전자파장해기기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자파장해 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이를 받지 않도록 함(제5조 단서)
- (나)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 합격한 기기와 형식명 및 제작자 등이 동일한 기기를 타인이 수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기기를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정

을 받지 않는 대신, 당해 기기가 검정에 합격한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함(제6조의 2)

(다) 전자파장해검정에 합격한 기기에 대하여 합격표장을 붙이지 아니한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호)

- 체신부령 제863호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선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작 또는 수입하는 무선기기의 형식검정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무선기기의 성능우지 및 그 자료제출 의무를 덜어줌으로써 무선국 개설자 또는 무선기기의 제작자 및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으면 준공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기에 차량전화 및 주파수공용무선기기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제2조 2항 제6조 7호)

(나) 무선기기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무선기기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자만이 형식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자도 형식검정을 신청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선기기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3조 제1항 삭제)

(다) 형식검정을 받아 합격한 무선기기와 그 형식명 및 제작자 등이 동일한 무선기기를 타인이 수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무선기기를 제출하여 시험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무선

기기와 검정에 합격한 무선기기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정기관의 확인을 반도록 함으로써 형식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선기기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3조의 2 제1항)

(라) 종전에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당해 무선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자체측정을 하고 매년 2회 그 결과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인 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

### 1993년 8월 31일(화)

#### ○ 대통령령 제 13,972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그 변동에 관한 등록 및 관리등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993년 9월 7일(화)

#### ○ 체신부고시 제 1993-82호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 지정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을 고시(체신부고시 제 1993-46호는 폐지) 이로써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시험장)에서 제30호 제일 EMC연구소(야외시험장)까지 지정됨

### 1993년 9월 13일(월)

#### ○ 상공자원부령 제14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992. 12. 8 법률 제 4,526호) 및 법시행령(1993. 8. 31 대통령령 제 13,97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993년 9월 16일(목)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88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승인요령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실시를 위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승인절차 및 관리감독요령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고시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89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에 관한 일반기준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 고시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90호 품질보증체제 연수기관 승인요령

–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품질보증체제 연수기관의 승인절차 및 관리감독 요령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고시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91호 품질보증체제 연수기관에 관한 일반기준

– 품질보증체제 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 고시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92호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자격기준 및 등록요령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에 의하여 상품의 공급자의 품질보증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원의 자격인정 및 등록절차와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고시

####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393호 품질보증체제 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표시사용 기준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 승인된 기관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받은 상품의 제조공급자가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승인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승인표시 사용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고시

### 1993년 9월 17일(금)

○ 공보처공고 제 1993-10호 종합유선방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취지 : 현행 종합유선방송법('91. 12. 31 법률 제 4,494호)상에는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바, 통상문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에서의 선진기법 도입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 프로그램공급 업에 한하여 일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

### 1993년 9월 20일(월)

○ 상공자원부령 제1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1종 전기용품 중 기술발달 및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감소된 품목을 신고대상인 2종 전기용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험성이 많고 사용이 빈번한 전기용품을 1종 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형식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사용이 대중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전기용품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1종 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1종 전기용품 중 위험성이 감

소된 전기용품은 2종으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그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별표 8)

(나)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품목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 줌(별표 8)

(다) 1종 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별표 9)

○ 체신부공고 제 1993-119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효율화 방침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체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연구소를 체신부장관이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연구소의 주된사업은 전자통신분야의 기초·기반기술 및 산업계 공통·애로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표준기술 및 시험기술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다른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등으로 함

(다) 연구소는 정부 또는 통신사업자 등 전자통신분야와 관계있는 자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연구소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체신부장관은 이를 심의 및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전자통신연

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소가 승계하도록 함  
(바) 연구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세감  
면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연구소  
로 하여금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 1993년 9월 22일(수)

- 체신부고시 제 1993-83호 전자파장해검정시험  
기관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을 고시(체신  
부 고시 제 1993-82호는 폐지) 이로써 전자파  
장해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시  
험장)에서 제31호까지 (주)금성사 EMC연구  
소(야외시험장)까지 지정됨

## 1993년 9월 27일(월)

- 경제기획원공고 제 1993-9호 정보화촉진기본  
법제정안
  - 제정이유 :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  
하고 그 기반이 되는 정보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본 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정보산업을 정보기기산업, 정보처리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정부는 공공·산업·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산업의 경쟁력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다) 정부는 정보화 촉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표준화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정

보화 지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

- (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  
하고 개인정보 등의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마) 정보처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있어서  
제조업에 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 (사) 정보화촉진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아)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 (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명시
- (차)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목적으로 제정한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정  
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흡수

## 1993년 10월 2일(토)

- 체신부고시 제 1993-88 무선설비 변경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 전파법 제1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무선  
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변경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개정고시
- 특허청고시 제 1993-8 비밀보호 신청시 첨부  
서류의 제출방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비밀보호신청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고시

## 1993년 10월 6일(수)

- 대통령령 고시 제 13,988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  
행령제정
  - 광주과학기술원법의 제정에 따라 광주과학기  
술원의 설립등기 절차와 학사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993년 10월 11일(월)

- 체신부고시 제 1993-91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설계의 변경
  - 전파법시행령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설계의 변경에 관한 체신부고시를 개정고시 함

## 1993년 10월 12일(화)

- 과학기술처공고 제 1993-51호 사단법인 한국과학문화개발원 설립허가
  - 설립목적 : 국민의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유도로 진정한 과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사업 : 국민에 대한 정확한 과학지식의 보급, 국민의 과학생활을 위한 홍보 및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진, 과학관련 법령 연구·홍보 및 과학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 1993년 10월 18일(월)

- 대통령령 제 13,996호 전파법시행령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무선국의 개설 및 이용에 관한 국민편의 증진과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선국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일부 무선국의 개설 허가제 또는 동 신고제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휴대전화, 차량전화 등)의 허가신청을 할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선국 허가신청서의 절차를 간소화함(영 제22조 제1항 제4호, 5호)

- (나) 무선국개설의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

도록 하고 있는 수신전용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6조 및 제56조의2)

(다) 전파사용료가 1천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을 조정함(영 제119조의 10 및 제119조의 12)

## 1993년 10월 27일(수)

- 체신부령 제865호 전파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개정이유 :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일부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종사자가 받아야 할 통신보안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방송국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전파법시행령의 개정(1993. 10.18 대통령령 제 13,996호)으로 수신전용무선기기의 허가 및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휴대전화, 차량전화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종사자는 3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무선국시설자 및 무선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줌(제40조)

(나)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종사자가 경미한 위반을 하여 운용정지 및 업무종사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면 동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선국시설자 및 무선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함(제198조)

(다) 전파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신전용 무선기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무선국에 대한 허가신청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별표 13 및 14호)

(라) 방송국용 공중선전력 1킬로와트미만인 방

송국의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별지  
제3호 서식2)

정함(영 별표 2)

1993년 10월 30일(토)

○ 대통령령 제 13,999호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

– 개정이유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설비공사업에 대한 신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공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동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기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부 체신부장관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업종변경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그 업종·지역 등을 종전에는 부정기적으로 공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동 공사에 대한 신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영 제5조)

(나) 전기통신설비공사업 중 일반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등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39조)

(다) 전기통신설비공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통신기술자격자의 수를 하향조정하고, 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통신기술자격자의 확보에 따른 공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영 별표 1)

(라) 전기통신설비공사업 중 일반공사업 외에 별종공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설치공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공사업자가 수급할 수 있는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조

1993년 11월 8일(월)

○ 체신부고시 제 1993-96호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기술적 조건

– 무선설비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거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기술적 조건을 고시

1993년 11월 11일(목)

○ 체신부고시 제 1993-97호 전산망분야 국가표준 및 기술지원서 제정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 8건과 기술지원서 3건을 제정하고 동법 제1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산망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제정 : 8건

- 01 정부개방시스템 상호접속규약·주소체계표준
- 02 인터네트 규약(IP) 표준
- 03 전송제어규약(TCP) 표준
- 04 단순우편 전송규약(SMTP) 표준
- 05 가상단말 전송규약(TELNET) 표준
- 06 화일전송규약(FTP) 표준
- 07 단순망 관리규약(SNMP) 표준
- 08 개방형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1) 표준

– 기술지원서 제정 : 3건

- 01 정부개방시스템상호접속규약(주소체계 사용자 기술지원서)
- 02 시각표시단말기(VDT)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 03 시각표시단말기(VDT) 작업관리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1993년 11월 13일(토)

○ 체신부령 제86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 개정이유 : 종합유선방송법의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의 전송망사업용설비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발전에 맞추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한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지하건축물의 각종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대상과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및 제21조)

(나) 국내전화통화시 전화망이 갖추어야 할 통화음량의 소실정도의 기준을 종전에는 주파수 1천헬즈에서 측정할 경우 32데시벨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헬즈에서 측정할 경우 2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전화통화품질의 기준을 조정함(제31조, 별표 2의 2)

(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전송망사업용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8조의 2 내지 제38조의 4)

(라)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체신부장관은 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물리적 위해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 3)

1993년 11월 16일(화)

○ 상공자원부령 제18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개정이유 : 전기안전관리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체 등 자가용발전설비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소규모수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력 3천 킬로와트이하의 수력발전설비를 전기설비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채용해야 하는 전기안전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용 발전설비용량의 범위를 100킬로와트 미만에서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완화함

1993년 11월 18일(목)

○ 체신부공고 제 1993-147호 전자파장해검정 규칙 중 개정령안

–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편익과 제조업체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자파장해검정 합격기기에 대한 일련번호부여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1993년 11월 27일(토)

○ 체신부고시 제 1993-101호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 지정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을 고시(체신부고시 1993-83호는 폐지) 이로써 전파장해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

시험장)에서 제32호 (주)한국전파시험기술연구소(야외시험장)까지 지정됨

1993년 11월 29일(월)

○ 체신부고시 제 1993-102호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본 고시는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선정등,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등, 연구개발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등의 장으로 구성된다.

1993년 12월 7일(화)

○ 공보처공고 제 1993-16호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가유선방송 허가제 폐지에 따라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유선방송시설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장하며, 중계유선방송의 녹음, 녹화 중계송신시간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자율화하고 유선방송실시결과 월보제도를 폐지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제안 취지로 입법예고

○ 공보처공고 제 1993-17호 유선방송관리법시행 규칙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가유선방송 허가제 폐지에 따라 동 허가제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유선방송사업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요율을 하향조정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입법예고

1993년 12월 9일(목)

○ 체신부공고 제 1993-159호 사단법인 한국전문가시스템학회 설립허가

— 전문가시스템에 관한 학문연구, 산학협동 및 국제교류증대로 정보시스템분야의 발전과 보급 및 응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동 법인의 설립허가를 공고

○ 체신부공고 제 1993-160호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응용학회 설립허가

— 정보처리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로 종합적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동 법인의 설립허가를 공고

1993년 12월 13일(월)

○ 대통령령 제 14,02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 지정시험기관에서 전기용품의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현행의 대학졸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도 시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1993년 12월 27일(월)

○ 법률 제4,622호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

—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함  
—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ISO 9000 시리즈)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위주의 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 제4,65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監聽)과 우편물의 검열 등을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를 사회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는 것임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

### 1993년 12월 28일(화)

- 공업진흥청공고 제 1993-1,705호 품질보증체 제인증기관 승인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승인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 품질인증센터를 인증 기관으로 승인 공고

### 1993년 12월 30일(목)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4-1호 제 1994-186호 표준검사기준 제정

### 1993년 12월 31일(금)

- 법률 제4,693호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정
- 법률 제4,694호 유선방송관리법 개정
  -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적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자가 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여 유선방송사업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제14,100호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되어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와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방송시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총리령 제444호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 유선방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유

선방송의 종류 중 자가유선방송 및 그 허가제와 유선방송실시결과 보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가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단체의 범위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의 재정적 기초의 유지와 당해 유선방송시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선방송사업 허가시에 그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 요율을 낮추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3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897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적합성시험방법 및 구성, 제1부 일반개념)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4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898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접속형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5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899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적합성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 사양)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6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900 원격조작—제1부 모델, 표기법 및 서비스 정의)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7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901 원격조작—제2부 프로토콜 사양)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8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902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 1부 일반개념)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49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903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 2부 가상파일 저장정의)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50호 한국공업규격제정(KS C 5904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 3부

파일서비스 정의

○ 공업진흥청고시 제 1993-1,151호 한국공업규

격제정(KS C 5905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 4부

파일프로토콜 사양